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보세항구관리 잠정시행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세관의 보세항구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이라 칭함)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근거로 동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동 방법이 칭하는 보세항구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국가의 대외 개방항만 및 그와 관련된 특정구역 내에 항만, 물류, 가공 등 기능을 구비한 세관의 특별관리구역을 가리킨다.

제3조 세관은 동 방법에 따라 보세항구를 출입하는 운송차량, 화물, 물품 및 보세항구 내 기업, 장소를 관리한다.

제4조 보세항구는 폐쇄형 관리를 시행한다. 보세항구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경내의 기타 지역(이하 ‘보세항구외부’라 칭함)사이에 세관의 관리요구에 어울리는 초소, 담장, CCTV 및 세관의 관리에 필요한 기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5조 보세항구 내에는 사람이 거주해서 안 된다. 보세항구 내 인원의 정상적인 작업,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비영리성시설 외, 보세항구 내에 상업적 생활소비 시설을 건설하거나 상업적 판매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세관 및 기타 행정관리기관의 사무 장소는 전체 보세항구 계획면적 내부 이면서, 보세구역 밖의 보세항구 종합사무지역 내에 설치해야 한다.

제6조 보세항구관리기관은 정보를 공유하는 컴퓨터 공공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자항만’을 통해 보세항구 내의 기업 및 관련 단체와 세관간의 전자데이터를 교환한다.

제7조 보세항구의 기초시설 및 관리시설, 장소 등은 《세관특별관리구역 기초시설 및 관리시설 검사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보세항구는 세관총서와 국무원 관련 부서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후 관련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제8조 보세항구 내에서는 다음 업무를 할 수 있다.

- (1) 수출입상품 및 세관 수속이 완료되지 않은 기타 상품의 보관
- (2) 국제중개무역을 포함한 대외무역
- (3) 국제구매, 분배 및 배송
- (4) 국제중계
- (5) 검사, 애프터서비스, 수리
- (6) 상품전시

(7) R&D, 가공, 제조

(8) 항만작업

(9) 세관의 허가를 받은 기타 업무

제9조 보세항구 내 기업(이하 구내기업이라 칭함)은 법인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세관에 세금납입 및 기타 법적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보세항구 주관세관의 허락 하에 보세항구 외부 법인기업이 법에 따라 보세항구 내에 분지점을 설립하고 세관에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 세관은 구내기업에 대해 컴퓨터 네트워크 관리제도 및 세관검열 제도를 실시한다.

구내기업은 세관의 관리요구에 부합되는 컴퓨터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세관이 데이터를 검열할 수 있는 단말기와 컴퓨터응용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하며, 세관이 규정한 인증방식과 데이터기준에 따라 세관과 연결망을 구축하고, 데이터의 진실성, 정확성,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세관은 구내기업에 대해 세관검열을 시행하고, 구내기업의 규범화관리, 자율적 법률준수 등에 대해 감독한다.

제11조 구내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재무관리를 규범화하고, 세관의 요구에 부합되는 장부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동 기업의 재무상황 및 보세항구를 출입하는 상품, 물품의 재고, 양도, 이전, 판매, 가공, 사용 등 상황을 기록하고, 관련 서류, 장부를 사실대로 기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장부를 기록, 결산한다.

제12조 보세항구 내 항만기업, 해운기업의 경영 및 유관활동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세관의 관리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3조 국가가 금지하는 수출입상품, 물품은 보세항구를 출입할 수 없다.

제14조 구내기업의 생산경영활동은 국가 산업발전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에너지 소모나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제품, 자원제품, 《가공무역금지 상품목록》에 포함된 제품의 가공무역 업무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제2장 보세항구와 해외 간 수출입상품에 대한 관리

제15조 보세항구와 해외 간에 수출입하는 상품은 보세항구 주관세관에서 세관수속을 밟아야 한다. 수출입항만이 보세항구 주관세관 관할구 내에 있지 않을 경우, 보세항구 주관세관의 비준을 받고 항만세관에서 세관수속을 할

수 있다.

제16조 세관은 보세항구와 해외 간에 수출입하는 상품에 대해 등록제 관리를 실시한다. 해외에서 보세항구로 반입하는 상품에 대해 보세처리 한다. 단, 동 방법 제17조, 제18조, 제39조 규정에 해당하는 상황은 제외한다.

앞 조항의 규정대로 등록제 관리를 할 경우, 상품의 수하인, 적송인 또는 대리인은 수출입상품 등록목록을 사실대로 기입하고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17조 법률, 행정법규의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상품이 해외에서 보세항구로 반입될 경우, 세관은 수입관세와 수입과정에서 세관이 대리 징수하는 세금을 면제한다.

(1) 국내 생산적인 기초시설건설에 필요한 기계, 설비 및 공장건물, 창고 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초물자

(2) 국내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 설비, 금형 및 그에 따른 수리용부품

(3) 국내기업과 행정관리기관의 자체사용에 필요한 적정량의 사무용품

제18조 해외에서 보세항구로 반입하여 국내기업 및 행정관리기구의 자가 용에 필요한 교통운수도구, 생활소비품은 수입상품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 신고수속을 밟으며,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과정에서 대리 징수한 세금을 징수한다.

제19조 보세항구에서 해외로 반출하는 상품은 수출관세를 면제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 보세항구와 해외 간에 수출입하는 상품은 수출입쿼터, 허가증 관리를 시행하지 않는다. 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세관은 동일한 쿼터, 허가증의 상품에 대해, 반입 시 이미 쿼터, 허가증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반출 과정에서는 기업에 쿼터, 허가증원본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제3장 보세항구와 보세항구 외부 간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리

제21조 보세항구와 보세항구 외부 간 수출입 상품에 대해, 국내기업 또는 보세항구 외부의 수하인이나 적송인은 수출입상품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세항구 주관 세관에 신고한다. 세금을 징수해야 할 경우, 국내기업 또는 보세항구 외부의 수하인이나 적송인은 상품수출입 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쿼터, 허가증 관리 대상 상품에 속하는 경우, 국내기

업 또는 보세항구 외부 수하인이나 적송인은 세관에 쿼터, 허가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세관은 동일한 쿼터, 허가증 관리 대상 상품에 대해 수입과정에서 쿼터, 허가증을 확인했을 경우, 수출과정에서는 기업에 재차 쿼터, 허가증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구내기업이 보세항구 외부에서 대외무역업무에 종사하고 또 상품이 실제로 보세항구로 반출입 되지 않을 경우, 수하인이나 적송인의 소재지 혹은 상품이 실제로 반출입 되는 항만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한다.

제22조 세관이 관리하는 상품이 보세항구와 보세항구 외부 간 반출입 될 경우 보세항구 주관세관은 상응한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구내기업이 가공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잔여재료, 폐품 및 가공생산, 보관, 운송 등 과정에서 발생한 포장재는 구내기업이 서면으로 세관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은 경우, 보세항구 외부로 운반할 수 있으며, 세관은 보세항구 반출시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수입쿼터, 허가증 관리에 속하는 상품일 경우, 수입쿼터, 허가증명을 요청하지 않는다. 《수입금지폐기물목록》에 포함된 폐기물 및 기타 위험한 폐기물을 보세항구 외부에서 처리해야 할 경우, 해당 기업은 보세항구 행정관리기관 및 보세항구 소재 시 환경보호 부문의 허가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보세항구 반출수속을 한다.

구내기업이 생산과정에 생기는 불량품, 부산물을 보세항구 외부에서 내수 판매할 경우, 세관은 내수판매 시 실제 상황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수입쿼터, 허가증 관리에 속할 경우, 기업은 세관에 수입쿼터, 허가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보세항구를 거쳐 보세항구 외부로 운반되는 우대무역협정 상품에 대해서는 세관총서의 원산지 관련 관리규정에 부합될 경우,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구내기업은 세관의 심사비준을 거쳐 통관신고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 신고를 집중적으로 하는 구내기업은 해당 월 신고 자료를 취합하여 수출입상품 신고서에 기입, 익월 말 전까지 세관에 신고수속을 해야 한다.

집중신고는 통관신고서 접수일의 세율, 환율을 적용하며, 연도를 넘겨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보세항구 외부의 상품이 보세항구로 반입될 경우, 상품수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납부 수속을 하고 아래 규정에 따라 수출환급에 사용되는 수출상품신고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1) 보세항구 외부에서 보세항구로 반입하여, 구내기업에서 업무용으로 사

용하는 국산상품 및 포장재에 대해 세관은 수출상품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수출상품신고증명서를 발급한다. 상품이 수출될 경우 출발지 세관은 보세항구 주관세관에서 발행한 증명, 즉 상품이 이미 보세항구로 진입했다는 전자증명을 받은 후 수출상품신고증명서를 발급한다.

(2) 보세항구 외부에서 보세항구로 반입하여, 보세항구 행정관리기관과 국내기업이 사용하는 국산건축물자, 기계, 선적하역설비, 관리설비, 사무용품 등은 세관이 수출상품의 관련규정대로 처리하고 수출상품신고증명서를 발급한다.

(3) 보세항구 외부에서 보세항구로 반입하여 보세항구 행정관리기관과 국내기업이 사용하는 생활소비품 및 교통운송차량은 세관이 수출상품신고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4) 보세항구 외부에서 보세항구로 반입한 원 수입상품, 포장재, 설비, 건축물자 등은 보세항구 외부기업이 세관에 상기 상품 또는 물품의 리스트를 제공하고, 수출상품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신고를 하며, 세관은 수출상품통관증명을 발급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관세, 수입과정에서 납입한 세금을 환급하지 않는다.

제27조 국내기업은 보세항구 주관세관의 비준을 거쳐 보세항구 종합사무구역의 전용 전시장에서 상품전시할 수 있다. 전시된 상품은 세관에 등록하고 세관의 관리를 받는다.

국내기업이 보세항구 외부의 다른 지역에서 개최하는 상품전시에 참가할 경우, 세관의 임시수입화물 관리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제28조 보세항구 내에서 사용하는 기계, 설비, 금형, 사무용품 등 세관이 관리하는 물품은 수입수리 물품의 관련규정에 따라 보세항구 외부로 운송하여 검사·수리할 수 있다. 국내기업이 금형을 보세항구 외부로 반출하여 검사·수리할 경우 금형이 생산하는 제품의 샘플 또는 도면자료를 남겨야 한다.

보세항구 외부로 반출하여 검사, 수리하는 기계, 설비, 금형, 사무용품 등은 보세항구 외부에서 가공생산과 사용에 쓰여서는 안 되며, 반출일부터 60일내에 보세항구로 반송해야 한다. 상황이 특수하여 제때에 반송할 수 없을 경우 국내기업 또는 보세항구 행정관리기관은 기한만료 7일전에 서면으로 세관에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연장기한은 3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검사·수리가 완료되어 보세항구로 반송된 기계, 설비, 금형, 사무용품 등은 원물이어야 하며 새 부품, 부속품을 갱신한 경우, 원래 부품을 첨부하여 보세항구로 반송해야 한다. 보세항구 외부에서 갱신한 국산 부품에 대한 세금을 환급해야 할 경우, 국내기업 또는 보세항구 외부 기업이 신청해야 하며,

보세항구 주관세관은 수출상품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하고 수출상품통관신고 증명을 발급한다.

제29조 구내기업이 금형, 원자재, 반제품 등을 보세항구 외부로 반출하여 가공해야 할 경우, 외부가공을 시작하기 전에 도급가공계약이나 협의서, 도급기업의 영업허가서 사본, 구내기업이 날인하여 확인한 도급기업의 생산능력 상황 등을 구비하여 보세항구 주관세관에 외부가공 반출수속을 해야한다.

보세항구 외부에 위탁가공 하는 기한은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가공 완료된 상품은 제때에 보세항구로 반송해야 한다. 보세항구 외부에서 외부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잔여물, 폐기물, 불량품, 부산물은 보세항구로 반송하지 않으며 세관은 실제상황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구내기업은 보세항구 외부 반출시 제출한 가공위탁신청서 및 관련 증명에 의거 세관에서 심사말소 수속을 한다.

제4장 보세항구 내 상품에 대한 관리

제30조 보세항구 내 상품은 자유로이 유통할 수 있다. 구내기업이 상품을 양도, 이전한 경우, 쌍방기업은 적시에 세관에 해당 상품의 품명, 수량, 금액 등 전자데이터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31조 구내기업은 가공무역 은행보증금 대장과 계약말소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세관은 보세항구 내 가공무역 상품에 대해 단위생산품 소비표준 관리를 하지 않는다. 구내기업은 업무개시일부터 정기적으로 세관에 상품의 보세항구반입, 반출, 보관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32조 보세항구 내에서 수리업무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기업법인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보세항구 주관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구내기업이 수리할 수 있는 제품은 중국이 수출하는 기계전자 제품의 애프터서비스에 한하고, 수리후의 제품, 갱신된 부품 및 수리과정에 생긴 물질 등은 다시 수출해야 한다.

제33조 구내기업이 위험한 화공제품과 가연소물품을 생산, 경영, 운송 업무를 해야 할 경우, 안전감독, 교통 등 관련 부문의 행정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보세항구 주관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탱크, 장치, 설비 등 시설은 세관의 관리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도관을 통해 보세항구를 수출입하는 상품은 계량장치와 기타 세관의 관리에 편리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4조 구내기업이 포기를 신청한 상품은 세관 및 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쳐 보세항구 주관세관이 법에 따라 매각처분하며, 처분수입은 세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와 세관이 포기를 못하도록 규정한 상품은 제외한다.

제35조 불가항력으로 인해 보세항구의 상품이 훼손, 분실된 경우 구내기업은 서면으로 보세항구 주관세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재해감정부문의 관련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보세항구 주관세관은 확인 후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물품이 분실되었거나 분실되진 않았지만 사용가치를 잃은 경우 세관은 말소 및 면세수속을 해준다.

(2) 수입물품이 훼손되어 일부 사용가치를 잃었을 경우 구내기업은 세관에 반송수속을 할 수 있다. 만약 반송수속을 하지 않고 보세항구 외부로 반출할 경우 구내기업이 신청하고 보세항구 주관세관이 확인비준하여 세관이 심사한 가격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3) 보세항구 외부에서 보세항구로 반입한 물품이 훼손되거나 일부 사용가치를 잃음으로써 수출기업에 교환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훼손상품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보세항구 주관세관에 반환수속을 한다.

보세항구 외부로 반환해야 할 경우, 수출환급수속 미 진행 건이면 보세항구 주관세관에서 반환수속을 할 수 있다. 이미 수출환급 수속을 한 경우 동조 제(2)항 수입상품 보세항구 외부반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 보관부실 등 불가항력 요인으로 인한 것이 아닌 상품훼손, 분실에 대해 구내기업은 적시에 보세항구 주관세관에 서면으로 상황을 보고한다. 보세항구 주관세관은 이를 확인 후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외에서 보세항구로 수입한 상품은 구내기업이 일반무역 수입상품의 규정에 따라 세관이 결정한 상품훼손 또는 분실전의 납세 후 가격에 따라 상품훼손 또는 분실한 날의 세율, 환율을 적용하여 관세, 수입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 등을 납부한다.

(2) 보세항구 외부에서 보세항구로 반입한 상품은 구내기업이 수출환급을 받은 국내과정 납부 세금을 재차 납부해야 하며 세관은 이에 근거해 확인말소를 하며, 수출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하지 않는다.

제37조 보세항구의 상품은 보관기한을 두지 않지만 보관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구내기업은 해마다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상품의 성질 및 실제상황 등 원인으로 보세항구에서 계속 보관 시 공공안

전, 환경위생 또는 인체건강을 영향 줄 경우 세관은 기업이 적시에 관련 세관수속을 하고 상품을 보세항구에서 반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38조 세관은 보세항구와 기타 세관이 특별 관리하는 구역 혹은 보세관리장소 간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보세처리 하며 수출환급세 처리에 사용되는 수출상품통관증명을 발급하지 않는다. 단 상품이 국내화물 입고(창고) 수속을 밟지 않았거나 수출환급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세관의 관리구역 또는 보세관리장소에서 보세항구로 반입할 경우, 동 상품이 실제로 수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송출지 세관이 수출환급처리에 사용되는 수출상품통관신고증명을 발급한다.

보세항구와 기타 세관이 특별 관리하는 구역 또는 세금보유관리장소 간 유통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입 과정의 관련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보세항구와 기타 세관이 특별 관리하는 구역 또는 세금보유관리 장소 간 왕래 상품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은 세관관리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5장 직접수출입상품 및 보세항구 수출입 운송차량, 개인휴대 상품에 대한 관리

제39조 보세항구를 통해 직접 수출입하는 상품은 세관이 수출입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상품을 수출하는 적송인 또는 대리인은 상품이 보세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수출상품이 보세항구에 도착한 뒤 세관은 신고접수 및 통관절차를 마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상품 세관신고증명서를 발급한다.

제40조 운송차량 및 보세항구를 출입하는 개인은 세관의 관리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수출입 운송차량 운전자 및 출입국 여객이 물품을 휴대하고 보세항구를 출입할 경우, 세관은 출입국 여객의 수하물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42조 보세항구와 보세항구 외부 간 수출입 거래가 이루어진 아래 상품은 세관의 비준을 거쳐 국내기업이 전문인을 파견하여 휴대 또는 자체운송하게 할 수 있다.

- (1) 가치가 미화 1만불 이하인 소액의 상품
- (2) 품질불합격으로 보세항구 외부로 반품하는 상품
- (3) 기 수입납세 수속을 마친 상품

- (4) 기업이 세금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상품
- (5) 기타 세관의 비준을 받은 상품

제6장 부칙

제43조 해외에서 보세항구로 수입한 상품과 보세항구에서 해외로 수출한 상품은 세관 수출입 통계에 포함시킨다. 단, 법률, 행정법규 및 세관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보세항구 외부에서 보세항구로 반입한 상품과 보세항구에서 보세항구 외부로 반출한 상품은 세관의 별도통계에 포함된다.

국내기업 간 양도, 이전한 상품 및 보세항구와 기타 세관의 특별관리구역 또는 보세관리장소간에 거래한 상품은 세관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44조 동 방법을 위반하여 밀수행위, 세관감독 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기타 세관법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세관이 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5조 국무원 비준으로 설립된 내륙지역의 보세항구 기능을 가진 종합보세항구는 동 방법을 참조하여 관리한다.

제46조 동 방법은 해관총서에 해석 책임이 있다.

제47조 동 방법은 2007년 10 월 3일부터 시행한다.